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훈 계 · 시 정 요 구

제 목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아산시,  
예산군

훈 계 대 상 자 ① 충청남도 ○○○○과 지방○○○○ ○○○

② 충청남도 ○○○○과 지방○○○○ ○○○

③ 충청남도 천안시 ○○○○과 지방○○○○○ ○○○

④ 충청남도 천안시 ○○○○과 지방○○○○ ○○

⑤ 충청남도 천안시 ○○과 지방○○○○○ ○○○  
(구 ○○○○과, 전 공주시 ○○○○과)

⑥ 충청남도 공주시 ○○○○과 지방○○○○○ ○○○  
(전 지방○○○○)

⑦ 충청남도 공주시 ○○○○과 지방○○○○ ○○○  
(전 공주시 ○○과)

⑧ 충청남도 공주시 산림과 지방○○○○○ ○○○  
(전 공주시 ○○○○과)

⑨ 충청남도 서산시 ○○과 지방○○○○○ ○○○

⑩ 충청남도 서산시 ○○과 지방○○○○○ ○○○

- ⑪ 충청남도 서산시 ○○과 지방○○○○○ ○○○
- ⑫ 충청남도 서산시 ○○○○과 지방녹지주사보 ○○○
- ⑬ 충청남도 당진시 ○○○○과 지방○○○○○ ○○○  
(전 당진시 ○○과 지방○○○○○)
- ⑭ 충청남도 당진시 ○○과 지방○○○○○ ○○○
- ⑮ 충청남도 보령시 ○○과 지방○○○○○ ○○○
- ⑯ 충청남도 아산시 ○○○○과 지방○○○○○ ○○○  
(전 아산시 ○○○○과)
- ⑰ 충청남도 아산시 ○○과 지방○○○○○ ○○○
- ⑱ 충청남도 예산군 ○○○○과 지방○○○○○ ○○○

## 내 용

지방○○○○ ○○○은 2015. 7. 21.부터 2016. 7. 20.까지 충청남도 ○○○  
○과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우회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고시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지방○○○○ ○○○은 2017. 1. 2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충청남도 ○○○○과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복합 일  
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  
하였다.

지방○○○○○ ○○○는 천안시 ○○○○과에서 2014. 3. 5.부터 2017. 4.  
9.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호 도로개설공사”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련업무와 2017. 4. 1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규모 환경영

향평가 대상사업인 “천안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시행계획 고시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지방○○○○ ○○○은 2015. 3. 1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천안시 ○○○○과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지방○○○○○ ○○○은 2015. 1. 1.부터 2016. 1. 3.까지 천안시 ○○○○과에서, 2016. 1. 4.부터 2017. 4. 9.까지 천안시 ○○○○과(현 ○○과)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지구(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지방○○○○○ ○○○은 2015.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주시 ○○○○과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지방○○○○○ ○○○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공주시 ○○과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골재(육상)채취(○○면) 개발사업”과 “골재(육상)채취(○○면) 개발사업” 허가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지방○○○○○ ○○○은 2013. 1. 14.부터 2016. 7. 17.까지 공주시 ○○○과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공주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 ○○○은 2016. 7. 8.부터 2017. 1. 1.까지, 지방○○○○○ ○○○은 2017. 1. 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 ○○○은 2017. 7. 8.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서산시 ○○과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과 소규모 환

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생태하천(○○천, ○○천, ○○천) 복원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공고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지방○○○○○ ○○○은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서산시 ○○○○과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주)○○ 석산개발사업” 토석채취 허가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지방○○○○○ ○○○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당진시 ○○○과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섬 ○○○교 건설사업” 도로 노선지정 공고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지방○○○○○ ○○○은 2015. 1. 1.부터 2016. 1. 3.까지 당진시 건축과(현 ○○○과)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대학교 ○○○캠퍼스 신축공사” 건축(증축)허가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지방○○○○○ ○○○은 2016.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령시 ○○○과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PG(중장비성능장) 구축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 ○○○은 2013. 1. 2.부터 2016. 1. 20.까지 아산시 ○○○○과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지방○○○○○ ○○○은 2015. 7. 2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산시 ○○○과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아산시 ○○○면 ○○○&○○○○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지방○○○○○ ○○○은 2017.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예산군 ○○○○과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공

사 시행계획 고시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이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부서)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기관(부서)에 통보하고, 부과·징수기관(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부과금액·납부기간 등에 관한 통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 징수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 1.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충청남도)

**가. “○○우회도로 개설공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충청남도 ○○○○국 ○○○○과는 2016. 1. 20.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우회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을 결정·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6-○○호)하였다.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면적 37,784㎡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 1. 20. “○○우회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23,615,70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나. “○○ ○○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충청남도 ○○○○실 ○○○○과는 2017. 7. 10.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복합(현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7-○○○호)를 하였다.

“○○ ○○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면적 444,179㎡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 7. 10. “○○ ○○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212,316,60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기간 중 ○○○○과는 2017. 11. 8. “○○ ○○복합(현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자, 인·허가 등의 내용을 부과·징수부서에 통보하여 2017. 11. 10. 생태계보전협력금 212,316,600원을 부과하였다.

[표1]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현황

(단위 : ㎡, 원)

사업자	사업명	소재지	소규모(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일	사업계획 승인일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사기간
					사업면적(연장, km)	부과금액	
충청남도	○○우회도로 개설공사	예산군 ○○면 ○○리 일원	2016.5.19.	2016.1.20.	37,784(0.914)	23,615,700	2016.2. ~ 2019.2.
(주)○○○○	○○ ○○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아산시 ○○면 ○○리 24-2번지 일원	2016.11.28.	2017.7.10.	444,179	212,316,600	2015. ~ 2018.12.

※ 충청남도 제출자료 재구성

결국, 지방○○○○ ○○○과 지방○○○○ ○○○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

과대상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이후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부서인 충청남도 ○○○○○과에 사업자, 인·허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23,615,700원과 212,316,600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실무책임이 각각 있다.

## 2.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천안시)

### 가. “○○○○호선 도로개설공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천안시 안전○○○○국 ○○○○과는 2016. 2.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호선 도로개설공사”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천안시 고시 제2016-○○호)하였다.

“○○○○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면적 94,091㎡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 2. 1. “○○○○호선 도로개설공사”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38,765,49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나. “천안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천안시 ○○○○○○국 ○○○○과는 2017. 8. 17.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천안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시행계획을 고시(천안시 고시 제2017-○○○호)하였다.

“천안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사업면적 76,673.9㎡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 8. 17. “천안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시행계획을 고시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31,589,64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다. “○○소하천 정비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천안시 ○○○○○○국 ○○○○과는 2016. 2. 26.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천안시 공고 제2016-○○○호)하였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면적 100,169㎡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 2. 26.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41,269,62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 라. “○○ ○○지구(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천안시 ○○○○실 ○○○○과는 2015. 12. 2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지구(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천안시 고시 제2015-○○○호)하였다.

“○○ ○○지구(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사업면적 41,391㎡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

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 12. 21. “○○ ○○지구(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정 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17,053,09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마. “○○ ○○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천안시 ○○○○국 ○○과는 2017. 3. 2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 조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천안시 고시 제2017-○○호)하였다.

“○○ ○○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사업면적 100,198㎡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 3. 22. “○○ ○○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정 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17,889,00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표2]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현황

(단위 : m<sup>2</sup>, 원)

사업자	사업명	소재지	소규모(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일	사업계획 승인일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사기간
					사업면적 (연장, km)	부과금액	
천안시	시도○○호선 도로개설공사	○○구 ○○읍 ○○리~○○리 일원	2015.11.10.	2016.2.1.	94,091 (5.073)	38,765,490	2016.2.~ ' 17.12.
천안시	천안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동남구 ○면 ○○리~○○리 일원	2017.8.14.	2017.8.17.	76,673.9 (1.87)	31,589,640	2017.8.~ 2019.12.
천안시	○○소하천 정비사업	○○면 ○○리 468~○○면 ○○리 62-4 일원	2016.1.12.	2016.2.26.	100,169 (4.875)	41,269,620	2016.3.~ 2019.12.
○○○○○ ○○(주)	○○ ○○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구 ○○면 ○○ 383-5 번지 일원	2015.6.10.	2015.12.21.	41,391	17,053,090	2015.12.~ 2017.12.
(주)○○○ ○	○○ ○○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결정	○○구 ○○면 ○○리 368-7 번지 일원	2017.1.5.	2017.3.22.	100,198	17,889,000	2017.3.~ 2020.12.

※ 천안시 제출자료 재구성

결국, 지방○○○○○ ○○○, 지방○○○○○ ○○, 지방○○○○○ ○○○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이후 20일 이내에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부서인 충청남도 ○○○○○○과에 사업자, 인·허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38,765,490원, 31,589,640원, 41,269,620원, 17,053,090원, 17,889,000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실무책임이 각각 있다.

### 3.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공주시)

#### 가.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공주시 ○○○○과는 2016. 5. 2.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공주시 고시 제2016-○○호)하였다.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면적 36,203㎡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 5. 2.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14,915,63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 나. “골재(육상) 채취 개발사업(○○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공주시 ○○과는 2015. 3. 6.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골재(육상) 채취 개발사업(○○면)”을 허가하였다.

“골재(육상) 채취 개발사업(○○면)”은 사업면적 36,072㎡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 3. 6. “골재(육상) 채취 개발사업(○○면)”을 허가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14,918,52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 **다. “골재(육상) 채취 개발사업(○○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공주시 ○○과는 2015. 8. 25.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골재(육상) 채취 개발사업(○○면)”을 허가하였다.

“골재(육상) 채취 개발사업(○○면)”은 사업면적 46,712.7㎡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 8. 25. “골재(육상) 채취 개발사업(○○면)”을 허가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

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19,245,63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라. “공주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공주시 ○○○○과는 2015. 6.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공주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공주시 고시 제2015-○○호)하였다.

“공주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는 사업면적 32,341㎡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이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 6. 1. “공주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13,324,49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표3]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현황

(단위 : ㎡, 원)

사업자	사업명	소재지	소규모(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일	사업계획 승인일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사기간
					사업면적 (연장,km)	부과금액	
공주시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면 ○○리 지내	2016.6.17.	2016.5.2.	36,203 (1.333)	14,915,630	2016.5. ~ 2017.4.

사업자	사업명	소재지	소규모(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일	사업계획 승인일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사기간
					사업면적 (연장,km)	부과금액	
주○○○ ○○○	골재(육상) 채취	○○면 ○○리 930번지 외 18 필지	2015.2.2.	2015.3.6.	36,072	14,918,520	2013.11.~ 2015.4
주○○○ ○○○	골재(육상) 채취	○○면 ○○리 587번지 외 12 필지	2015.6.18.	2015.8.25.	46,712.7	19,245,630	2015.8.~ 2016.1.
농업회사 법인 (주)○○	공주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설비) 결정	○○면 ○○리 365-3번지 일원	2015.4.30.	2015.6.1.	32,341	13,324,490	2015.7.~ 2016.12.

※ 공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결국, 지방○○○○○ ○○○, 지방○○○○○ ○○○, 지방○○○○○ ○○○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이후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부서인 충청남도 ○○○○○○과에 사업자, 인·허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14,915,630원, 14,918,520원, 19,245,630원과 13,324,490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실무책임이 각각 있다.

#### 4.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서산시)

##### 가. “○○소하천 정비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서산시 ○○○과는 2016. 8. 10.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서산시 공고 제2016-○○○○호)하였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면적 34,742㎡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 8. 10.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14,313,70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 나. “○○소하천 정비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서산시 ○○과는 2017. 9. 8.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서산시 공고 제2017-○○○○호)하였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면적 33,972㎡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 9. 8.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

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13,996,46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다. “생태하천(○○천, ○○천, ○○천) 복원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서산시 ○○과는 2017. 9. 1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생태하천(○○천, ○○천, ○○천) 복원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서산시 고시 제2017-○○○호)하였다.

“생태하천(○○천, ○○천, ○○천) 복원사업”은 사업면적 190,413m<sup>2</sup>으로 개발면적 3만m<sup>2</sup>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 9. 14. “생태하천(○○천, ○○천, ○○천) 복원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319,697,77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라. “(주)○○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서산시 ○○○○과는 2016. 7. 20.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주)○○ ○○개발사업” 토석채취를 허가하였다.

“(주)○○ ○○개발사업”은 사업면적 86,055m<sup>2</sup>으로 개발면적 3만m<sup>2</sup>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 7. 20. “(주)○○ ○○개발사업” 토석채취를 허가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96,286,20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과는 약 1년 3개월 통보기간을 초과하여 2017. 11. 21. “(주)○○ ○○개발사업” 사업자, 인허가 등의 내용을 부과·징수부서에 통보하여 2017. 11. 24. 생태계보전협력금 96,286,200원을 부과하였다.

[표4]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현황

(단위 : m<sup>2</sup>, 원)

사업자	사업명	소재지	소규모(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일	사업계획 승인일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사기간
					사업면적 (연장.km)	부과금액	
서산시	○○소하천 정비사업	○○면 ○○리 8~152번지 일원	2015.5.18.	2016.8.10.	34,742 (1.74)	14,313,700	2016.11.~2019.5.
서산시	○○소하천 정비사업	○○면 ○○리 240-5번지, ○○리 10-8번지 일원	2015.5.18.	2017.9.8.	33,972 (1.021)	13,996,460	2017.3.~2018.9.
서산시	생태하천(○○천, ○○천, ○○천) 복원사업	○○○동, ○○면, ○○면, ○○면 일원	2016.12.22.	2017.9.14.	401,576 (7.3)	319,697,770	2017.10.~2020.12.
(주)○○	(주)○○○○ 개발사업	○○면 ○○리 960-9번지 외 7필지	2015.8.25.	2016.7.20.	86,055	96,286,200	2016.7.~2026.6.

※ 서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결국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농지주사보 ○○○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이후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부서인 충청남도 ○○○ ○○○과에 사업자, 인·허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14,313,700원, 13,996,460원, 319,697,770원과 96,286,200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실무책임이 각각 있다.

## 5.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당진시)

### 가. “○○섬 ○○교 건설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당진시 ○○○과는 2015. 11. 5.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섬 ○○교 건설사업”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당진시 공고 제2015-○○○○호)를 하였다.

“○○섬 ○○교 건설사업”은 사업면적 81,628㎡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

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에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 11. 5. “○○섬 ○○교 건설사업”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33,630,73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 나. “○○대학교 ○○캠퍼스 신축공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당진시 ○○과는 2015. 3. 9.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대학교 ○○캠퍼스 신축공사” 건축(증축)을 허가하였다.

“○○대학교 ○○캠퍼스 신축공사”는 사업면적 64,789㎡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건축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 3. 9. “○○대학교 ○○캠퍼스 신축공사” 건축(신축)을 허가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19,725,30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표5]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현황

(단위 : m<sup>2</sup>, 원)

사업자	사업명	소재지	소규모(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일	사업계획 승인일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사기간
					사업면적 (연장.km)	부과금액	
당진시	○○섬 ○○교 건설사업	○○면 ○○도 31-2~355-53번지 일원	2015.10.27.	2015.11.5.	81,628 (2.53)	33,630,730	2016.~2020.12.
학교법인 ○○○○	○○대학교 ○○ 캠퍼스 신축공사	○○면 ○○리 4-1번지 외 19필지	2015.3.5.	2015.3.9.	64,789	19,725,300	2015.5.~2017.2.

※ 당진시 제출자료 재구성

결국 지방○○○○ ○○○, 지방○○○○○ ○○○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이후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부서인 충청남도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33,630,730원과 19,725,300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실무책임이 각각 있다.

## 6.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보령시)

### 가. “○○ PG 구축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보령시 ○○○○과는 2017. 9. 2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PG(중장비성능장) 구축사업”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보령시 고시 제2017-○○○호)하였다.

“○○ PG(중장비성능장) 구축사업”은 사업면적 289,059㎡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 9. 29. “○○ PG(중장비성능장) 구축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214,551,90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기간 중 ○○○○과는 2017. 10. 8. “○○ PG(중장비성능장) 구축사업”의 사업자, 인·허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214,551,900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가 지연되었다.

[표6]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현황

(단위 : ㎡, 원)

사업자	사업명	소재지	소규모(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일	사업계획 승인일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사기간
					사업면적 (연장, km)	부과금액	
○○○○ ○○○ (주)	○○ PG(중장비 성능장) 구축사업	○○면 ○○리 산52-4번지 원	2017.9.15.	2017.9.29.	289,059	214,551,900	2017.10. ~ 2020.12.

※ 보령시 제출자료 재구성

결국, 지방○○○○○ ○○○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이후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부서인 충청남도

○○○○○○과에 사업자, 인·허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214,551,900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실무책임이 있다.

## 7.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아산시)

### 가. “○○ ○○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아산시 ○○○○과는 2015. 6. 15.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아산시 고시 제2015-○○○호)하였다.

“○○ ○○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사업면적 42,092㎡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 6. 15. “○○ ○○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17,341,90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 나. “○○시 ○○면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아산시 ○○과는 2016. 11. 30.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전

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시 ○○면 주택건설사업(○○&○○○○) 지구 단위계획” 주택건설(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고시(아산시 고시 제2016-○○○호)하였다.

“아산시 ○○면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면적 122,361㎡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 11. 30. “아산시 ○○면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50,412,730원이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표7]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현황

(단위 : ㎡, 원)

사업자	사업명	소재지	소규모(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일	사업계획 승인일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사기간
					사업면적 (연장, km)	부과금액	
(주)○○○○	○○ ○○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면 ○○리 608-2번지 일원	2015.5.1.	2015.6.15.	42,092	17,341,900	2015.6. ~ 2019.12.
(주)○○○○ 외 1개사	아산시 ○○면 ○○&○○○○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면 ○○리 152번지 일원	2015.7.22.	2016.11.30	122,361	50,412,730	2016.12. ~ 2020.3.

※ 아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결국, 지방○○○○○ ○○○, 지방○○○○○ ○○○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이후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부서인 충청남도 ○○○○○○과에 사업자, 인·허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17,341,900원과 50,412,730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실무책임이 각각 있다.

## 8.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예산군)

### 가.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예산군 ○○○○과는 2017. 9. 5.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예산군 고시 제2017-○○○호)하였다.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면적 125,599㎡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충청남도 ○○○○○○국 ○○○○○○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 9. 5.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

전협력금 55,831,650원이 부과되지 않았다.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 중 ○○○○과는 2017. 11. 8.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사업자, 인·허가 등의 내용을 부과·징수기관에 통보하여 55,831,650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가 지연되었다.

[표8]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현황

(단위 : m<sup>2</sup>, 원)

기관명	사업명	소재지	소규모(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일	사업계획 승인일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사기간
					사업면적 (연장, km)	부과금액	
예산군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읍 ○○리 428-1~○○리 267-5번지 일원	2015.6.30.	2017.9.5.	125,599 (3.15)	55,831,650	2017.10.~ 2021.9.

※ 예산군 제출자료 재구성

결국, 지방○○○○○ ○○○○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이후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부서인 충청남도 ○○○○○○과에 사업자, 인·허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55,831,650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실무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 천안시장, 공주시장, 서산시장, 당진시장, 보령시장, 아산시장, 예산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필요한 사업자, 인·허가 등의 내용을 충청남도 ○○○○○○국 ○○○○○○과에 통보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